

행정처분의 기준 (제5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15조제5항제1호·제2호, 법 제16조의6제1호·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업,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1)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1	등록취소			

	호					
2)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 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2 호	등록취소				
3)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) 2회	법 제15조 제 5 항 제 3 호	영업정지 1개월				
나) 3회 이상		영업정지 3개월				
4)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4 호	등록취소				
5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5 호	등록취소				
가) 기술인력을 전부 갖 추지 못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나)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		등록취소				
다) 기술능력 요건에 속 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(수질 분야만 해당한다)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라) 기술능력 요건에 속 하는 실험기기가 부족 한 경우(수질 분야만 해당한다)						
6)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 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 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6 호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		

7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지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7 호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	
8) 도급받은 방지지설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8 호	등록취소			
10)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	법 제15조 제 5 항 제 9 호	등록취소			

나.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16조의6제1 호	등록취소		
2) 임원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16조의6제2 호	등록취소		
3)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6조의6제3 호			
가)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		경고	지원중단 6개월	등록취소
나)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		등록취소		
4)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16조의6제4 호	경고	등록취소	
5)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16조의6제5 호	경고	경고	등록취소

다.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
1)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9조 제1호	지정취소				
2)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 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 제2호	지정취소				
3)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 게 된 경우	법 제19조 제3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		
4)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 제4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	
5)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 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9조 제5호					
가)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 우		지정취소				
나) 인증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 우	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		
6)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 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 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 제6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	
7)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 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 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 거나 시험·분석에 필요 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 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 제7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	
8)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	법 제19조	지정취소				

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	제8호	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	--	--	--